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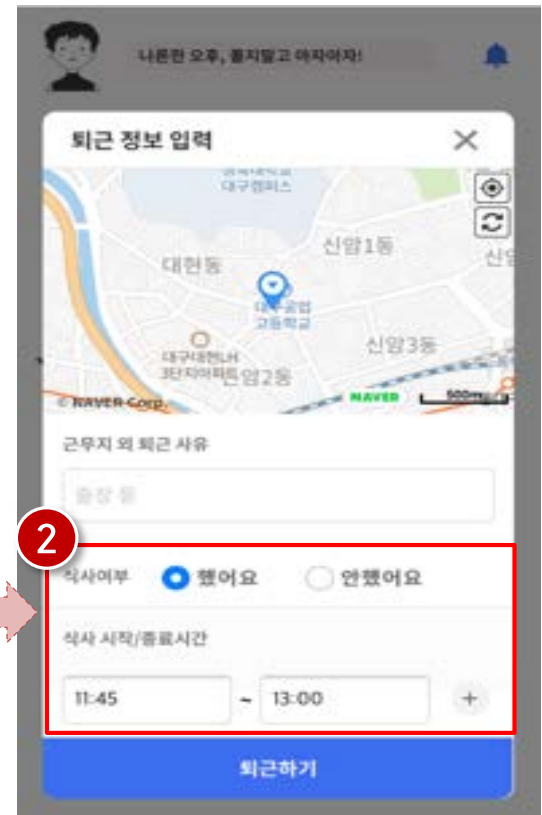
< 진행절차(모바일) >



퇴근 시, [퇴근] 버튼 클릭



근무중 식사시간이 있었을 경우, 식사여부 [했어요]에 체크



실제 식사시간을 정확히 입력

모바일 출근부 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출근부입력방식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출근부 입력 가능!

출근부관리

* 출근부는 근로일 당일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위치기반 동의여부 [동의/거부](#)

재입구분	출근여부	제외일자	직종시작일자

○ 출근부를 입력하거나 리스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 년 월 일

○ 누적활동시간

구분	누적활동시간	총 인정 근로시간	계정잔액	잔액제한시간
총계	0시간	0시간	11,300원	

* 근로자유활동 제한시간까지 근로가능하며, 학기 최대 제한시간은 합계 유효 총 제한시간이 가결

○ 활동근부 [출근부입력방식 변경하기](#)

선택	근로년월	근로기관명	근로사명	제외일자	기본 출근여부	내역 출근여부
<input type="checkbox"/>						

[출근부관리 >](#)

알림 메시지

국가근로장학금 출근부는 모바일 출근부 앱에서 작성하여야 하
나, 부득이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출근부 입력방
식 변경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 1 모바일 출근부 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출근부입력방식 변경 버튼 클릭
- 2 팝업창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 출근부 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경우, 업무스케줄도 변경된 방식으로만 입력 가능함

모바일 출근부 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출근부입력방식 변경(모바일->PC)

- ※적용일자동안 출근부 및 업무스케줄 입력이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적용일자 내 출근내역이 있을 경우, 출근부입력방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변경내역은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적용일자 시작은 익일부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출근부 입력방식 변경시, 업무스케줄도 변경된 방식으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출근부입력방식 변경(모바일->PC)

적용일자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유	<input type="text"/>		

[등록 >](#)

출근부입력방식 변경내역 조회

- ※ 적용일자는 익일부터 지정 가능

선택	순번	적용일자	사유	수정사유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수정 >](#) [삭제 >](#)

1 출근부 입력방식(PC→모바일) 적용일자 설정, 변경사유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

- ※ 적용일자동안 출근부 및 업무스케줄 입력이 PC에서만 가능
- ※ 적용일자 내 출근내역이 있을 경우 출근부입력방식 변경이 불가
- ※ 변경내역은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적용일자 시작은 익일부터로 지정 가능

< 진행절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출근부관리

* 출근부는 근로일 당일만 입력 및 수정 가능

○ 입력기간 도의여부

입력기간도의여부

재입구분	출근여부	제외일자	작성시작일자

○ 출근부를 입력하려 리스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부 조회 년 월 일

○ 누적활동시간

구분	누적활동시간	총 인정 근로시간	계정장학금	제외활동시간
총계				

* 근로자유일별 제한시간까지 근로가능하며, 학기 최대 제한시간은 합계 유효 총 제한시간이 가질 순 유효여부를

○ 활동근부

활동근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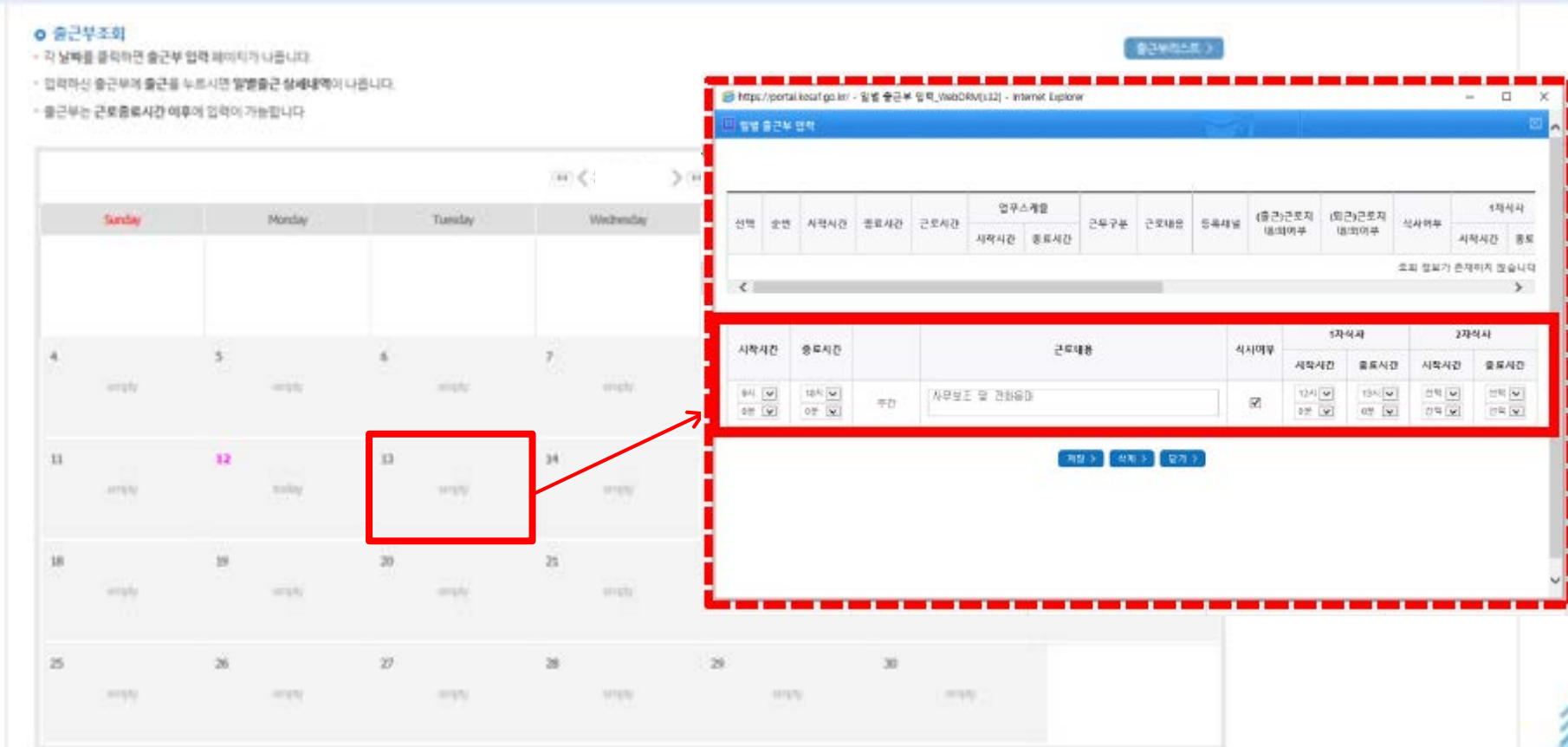
선택	근로년월	근로기관명	근로사항	제외일자	기준 출근여부	대학 출근여부	
<input type="checkbox"/>					제외됨	미승인	<input type="button" value="출근부입력"/>

- 출근부를 입력할 근로지를 선택 후, 오른쪽의 출근부 입력 버튼 클릭
 -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누적활동시간을 잘 확인할 것
 - * 출근부 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경우에만 홈페이지에서 업무스케줄 작성 가능
 - * 출근부는 근로 당일에만 작성 가능

< 진행절차(홈페이지) >

출근부조회

- 각 날짜를 클릭하면 출근부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 입력하신 출근부에 출근을 누르시면 알람출근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 출근부는 근로종료시간 이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portal for attendance management. On the left is a calendar grid with dates from 4 to 30. The date '13'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 red arrow points from this date to a detailed form on the right. The form is titled '출근부조회' and contains several input fields and checkboxes. A red dashed box highlights the form's input sections, including fields for '시작시간' (Start Time), '종료시간' (End Time), '근로내용' (Work Content), and '식사여부' (Meal Status). The '식사여부' section has dropdown menus for '1차식사' and '2차식사' with options for '시작시간' and '종료시간'.

- 2** 달력에서 근로날짜를 클릭하여, 일별 출근부 입력
 - 점심식사 한 경우, [식사여부] 체크 후 점심식사 시간 입력
 ※ 정확한 시간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부정근로로 적발될 수 있음
 예) 9시 25분에 출근한 경우, 시작시간을 9시 25분으로 입력



Ⅲ

장학생 유의사항

< 근로기관 상호평가 안내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기관 평가



- 1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필요(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2 1시간 이상 출근부를 등록한 시점부터 근로기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 당해학기 4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1차 평가 필요(출근부 입력 불가)
 - 당해학기 8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2차 평가 필요(출근부 입력 불가)
- 3 근로기관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근로시간이 40시간, 80시간이 넘기 전에 미리 근로기관 평가 필요

< 이럴 땐 근로할 수 없어요!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동시참여불가

(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점심시간에는 근로 불가



학적 상태가 '재학' 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된 경우

* 학적변동 발생 시 대학 담당자에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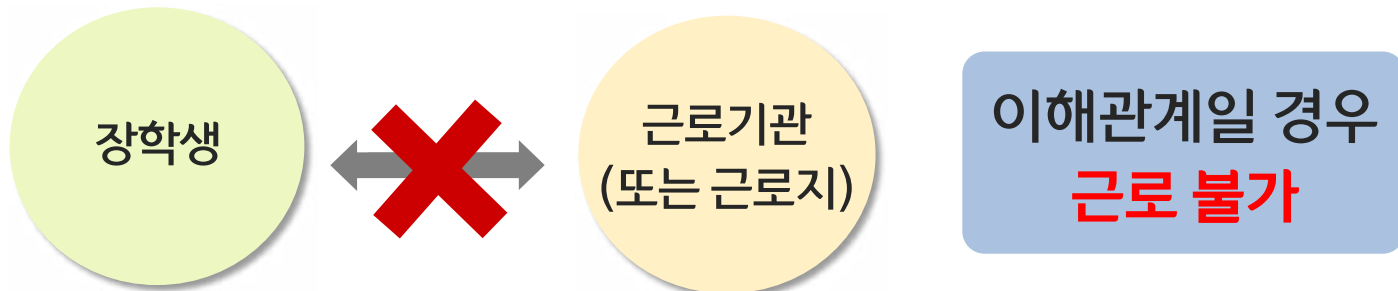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 적발 시

< 근로기관 및 근로지 담당자(대표자 포함)와 가족관계라면! >

근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 포함) 또는 장애대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장학생은 매칭되거나 매칭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대표자, 담당자 포함)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안내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으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과 장애대학생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

< 근로기관을 처음 방문했어요! >

국가근로장학생 기본예절

근로장학생은 소속대학의 얼굴입니다!

- 1 출근시간 전에 일찍 도착하여 하루 일과 계획하기(지각금지)
- 2 사무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하기
- 3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 휴대전화 사용 자제
- 4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업무태도 가지기
- 5 근무시간 중 근로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 외의 행동 지양하기
- 6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인사 후 퇴근하기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월별 출근부 제출 안내

- 1 매월 말에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를 대학제출 해야 함
- 2 월별 출근부 제출 이후, 장학금 지급 가능
- 3 근로기관의 월별 출근부 제출이 늦어지면 전체 학생의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므로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제출기한에 맞게 제출해야 함
※ 대학별 출근부 제출 일자 상이
- 4 근로기관 담당자도 근로장학생 평가를 해야 하며,
- 근로장학생이 80시간 이상 근로 시 1차평가, 2차평가 총 2회 평가 필요

< 근로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근로중지 자진신고제

해외여행, 군복무 등으로 근로를 중단할 경우, 이용해주세요!

- 1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 2 근로 중, 해외여행, 군복무 등이 계획되어 있다면 사전에 대학 담당자에게 안내
- 3 대학 담당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본인 명의의 전자항공권, 탑승권 등)
※ 본인 이름, 날짜, 출도착시간 등이 명확히 보여야 함



IV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안내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이란?

사업목적

- 방학 중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개발의 기회 제공
- ※ 재단이 전국 단위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며, 근로장학생은 방학기간 중에 다양한 분야의 근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방학기간에 귀향 등으로 발생하는 자기역량 개발 단절문제 해결

운영기간

하계 7월~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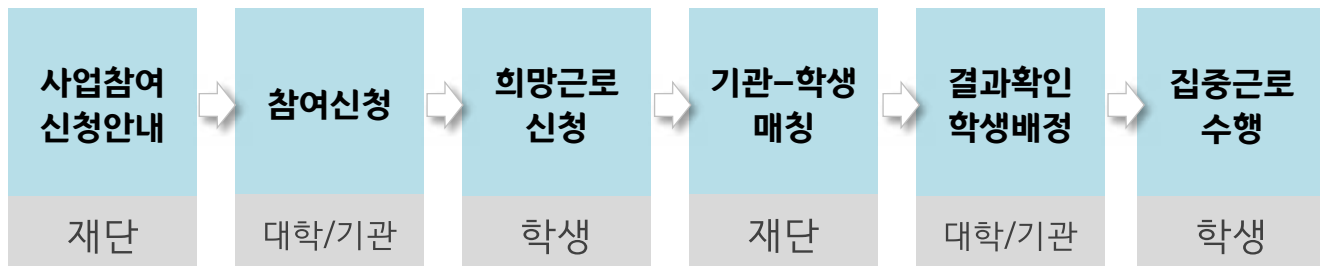
동계 1월~2월

참여대상

대학 해당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중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대학

학생 해당년도 대상 대학의 재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기신청자

진행절차





V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 부정근로란? >

출근부입력시 장학생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 및 시간과 다르게 허위로 입력한 경우

허위
근로

대체
근로

대리
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장학금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근로 예시 >

허위 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하던 근로장학생 A군은
근로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나가거나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실제로 근로는 하지 않고 출근부만 기록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A군은 근로는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여 장학금
을 받은 허위근로에 해당한다.

장학금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부정근로 예시 >

대체
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P군은
1월 3일에 근로해야 하지만 1월 7일로 바뀌어 근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출근부를 입력할 때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1월 3일에 출근부를 입력하였다.

P군은 입력한 출근부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근로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부정근로 예시 >

대리근로

선발된 장학생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 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C양은 늦잠을 자느라 그만 학교에 가지 못해 친한 친구 G양에게 오늘 하루만 본인 대신 근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한 친구의 부탁에 G양은 C양 대신 도서관에서 대신 근로를 하였다.

C양은 선발된 장학생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한 대리근로에 해당된다.

대리근로자를 포함하여 장학금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부정근로 학생제재 >

※ 유형별 부정근로 제재기준은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허위근로

확정일로부터 근로 중단 및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불가

대리근로

확정일로부터 근로 중단 및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불가
 (대리근로의 경우,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대체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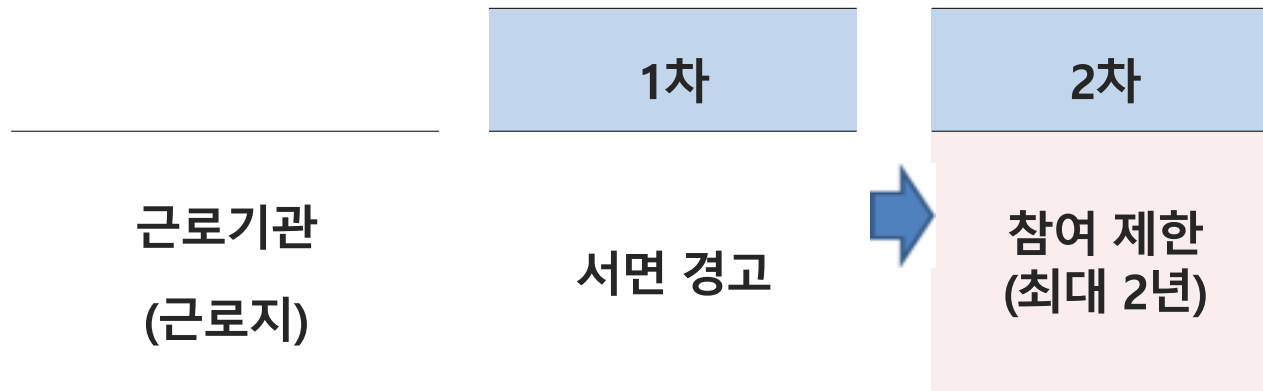
확정일로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불가

※ 사업참여제한의 경우,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전체 불가

< 부정근로 기관제재 >

※ 유형별 부정근로 제재기준은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근로기관에 대한 조치



- 1 허위근로 적발 시, 확정일로부터 **2년간 사업참여 불가**
- 2 대체, 대리근로 적발 시, 확정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불가**
(단, 경중에 따라 최대 2년간 참여제한)

※ 자격 해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을 시킬 수 있음

※ 사업참여 제재 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 공공재정 환수법 >

※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장학금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부정이익 원금만 환수 → (개편) 원금 + 이자 + 제재부가금 + 연체가산금 환수

관련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공공재정 환수법 >

※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부정근로,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1

부정이익

'20. 01. 01. 이후 지급된 국가근로장학금

2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계산 방법]

-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 1천분의 18('20.03.13.)
- 이자 계산기간: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공공재정 환수법 >

※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3 제재부과금 환수범위,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 및 징수**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원금)의 5배	부정이익(원금)의 5배	없음

4 가산금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연체 1개월 내	연체 1~2개월	연체 2~3개월	연체 3개월 이상
2%	3%	4%	5%

환수처리절차

공공재정환수법, 동법 시행령 환수 및 납부 절차에 준하여 처리

※ 환수범위, 환수 대상 금액 등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 안내 예정



VI 장학생 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 안전사고 예방 >

안전규칙 준수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정기적인 스트레칭을
통한 질환 예방

비상구, 소화기
위치 및 피난로 인지

• 쫄려 앉아서 일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며 일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위를 보며 일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어깨를 뻗으며 일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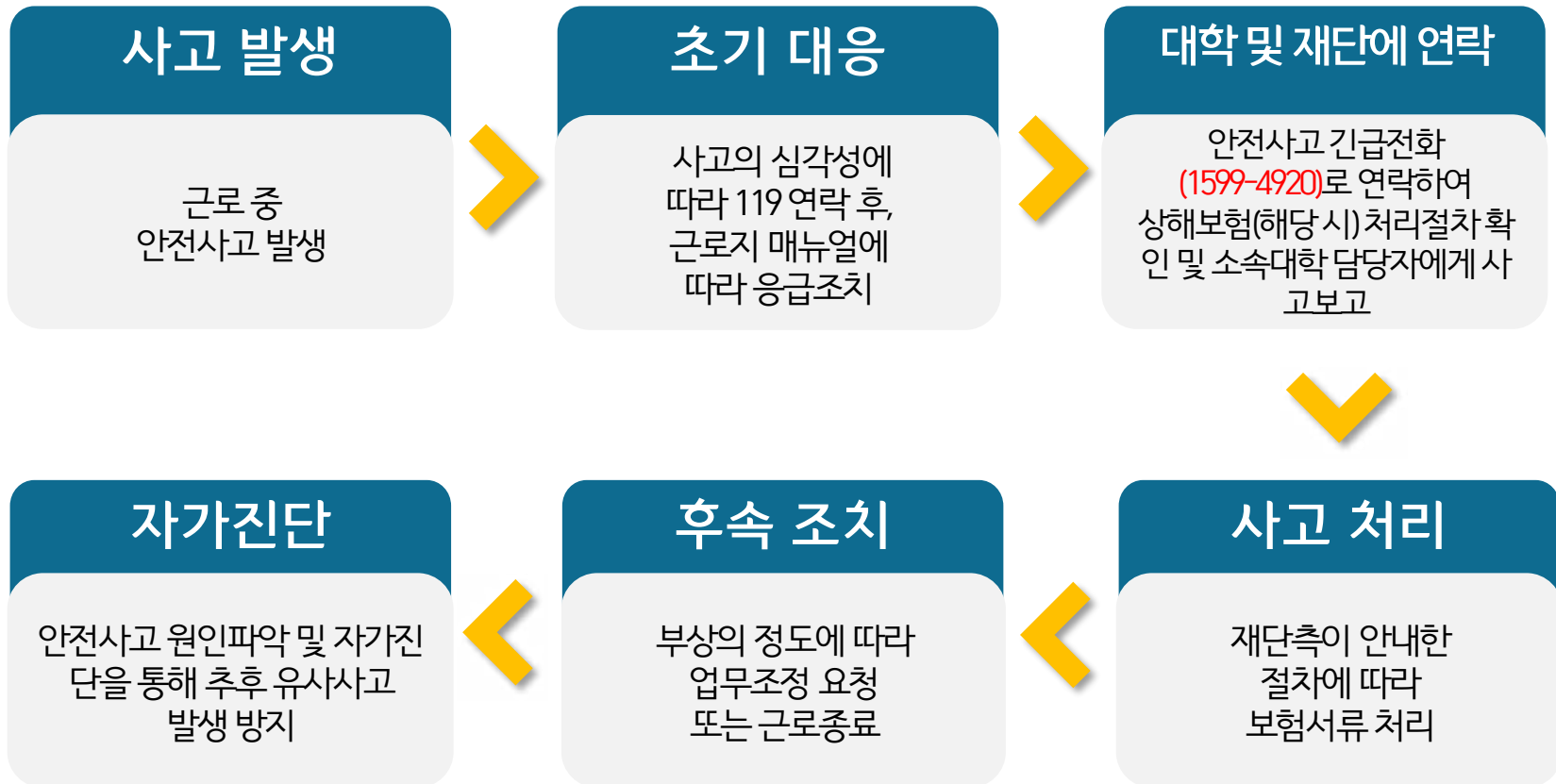


교외근로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사고보고 및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 (1599-4920)**를 통해 단체상해보험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교외근로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중 부득이한 수업 관련 교외활동에 한하여 적용됨

<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



< 성희롱이란? >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혹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 ▶ 재단전화: [1599-2290](tel:1599-2290)
- ▶ 피해 발생 시 : [여성긴급전화\(1366\)](tel:1366)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